

시 민

문서번호	인사과-6506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0호

★주무관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인력개발과장 감사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성과관리팀장		



'17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및 향후 제도개선 계획

2017. 3

행 정 국
(인 사 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시 민 참 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 회 적 약 배 배 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 별 분 리 통 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 자 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 거 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 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타 기 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 책 영 문 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바 른 우 리 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 재 문 서 공 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목 차

I	실적가점 운영현황	1
II	2017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계획	2
	① 평가대상	2
	② 대상자 추천기준	2
	③ 실적가점 부여기준	3
III	세부 평가계획	4
	① 실적가점 대상자 선정·추천(실·본부·국·3급사업소·자치구)	4
	②재심청구 등 불공정행위 조사(감사담당관)	5
	③ 실적가점 평가(외부전문기관)	6
	④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7
	⑤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8
	⑥실적가점 관리(인사과)	8
IV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9
V	2018년 실적가점 제도개선 계획(안)-사전예고	10
	① 실적가점 제도개선 필요성	10
	②추진경과	10
	③개선방향	11
	④세부개선(안)	11
	⑤실적가점 제도개선(안) 적용·시행	12

'17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및 향후 개선계획

I 실적가점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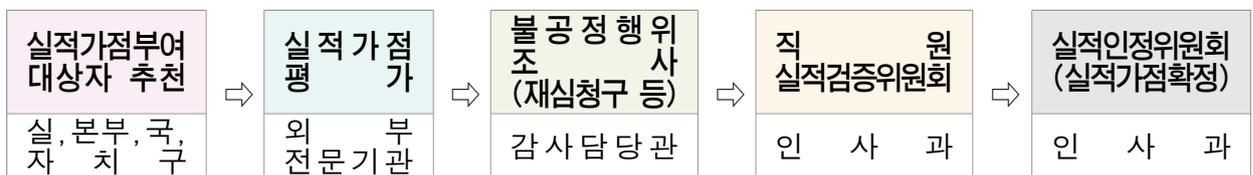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운영개요

- 부여대상 :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운영시기 :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부여인원 : 현원¹⁾의 5%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부여점수 : 사업실적 2~5점(1인당 1.5점 이내), 개인실적 1.2~0.1점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만큼 반영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150P, 150천원)

○ 운영절차



〈 2016년 실적가점 운영 실적 〉

구분	2016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추천인원	선정현황					추천인원	선정현황				
		합계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합계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합계	776	586	91	165	170	160	763	554	88	168	149	149
사업실적 (사업수)	656 (207)	499 (148)	79 (21)	141 (42)	148 (42)	131 (43)	652 (210)	475 (147)	78 (21)	146 (42)	126 (42)	125 (42)
개인실적	120	87	12	24	22	29	111	79	10	22	23	24

1) 현원기준 : 본청 및 사업소 - 5급이하 현원 / 자치구 - 통합인사대상 현원

□ 평가대상

- 대상기간 : '16.10. 1. ~ '17. 3.31(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대상자 추천기준

○ 추천단위

- 실·본부·국·3급 이상 사업소(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자치구(통합인사대상인 7급 이하 전산직, 5급 이하 기술직만 해당)
- ※ 강남구 제외(시·구 통합 인사대상에서 제외, 인사과-17392, 2015.6.19.)

○ 추천가능인원(붙임1 참조, '17. 2.28자 기준)

- 실·본부·국·3급 사업소 : 5급 이하 현원의 5%범위 내
- 자치구 : 통합인사 대상 현원의 5%범위 내

○ 추천방법 : 기관별 자율결정

- 신청분야·비율은 기관별 자율 결정하되, 사업실적을 70%내외로 신청
- '사업참여자+개인신청자' 수는 기관 추천가능 인원내로 제한(첨부1)
- 특히, 4급 이하 사업소 직원들이 실적가점 평가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본부·국 내 인원 비율을 고려하되 사업소 직원들을 반드시 10%이상 추천하고 사업소 직원 비율이 50%가 넘은 경우 가급적 20% 이상 추천

〈 추천시 고려사항 〉

-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 기관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 등 제외**

□ 실적가점 부여기준

< 기본원칙 >

- 추천인원의 70% 내외의 인원내 대해 실적가점대상자를 선정하되, 제출된 사업·개인 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 내외를 사업 실적에서 선정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등급별 비율은 「실적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제외 30% 내외에서 조정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만의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 5개 분야 >

평가 부문	주요 내용	등급별 점수				비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5	4	3	2	· 1인당 1.5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신설)	1.2	1.0	0.7	0.5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 (소송업무는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불입의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이외에 별도 추천 ▶ 실적·점수상대상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1.0	0.7	0.5	0.3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5	0.3	0.2	0.1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Ⅲ

세부 평가계획

〈 실적가점 평가절차〉



①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자치구

각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의 자체 평가를 통해 신청자 중 현원의 5% 내외 직원을 실적가점 부여대상자로 선정·추천

□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자치구 부구청장
- 위 원
 - 본청 기준으로 부서장(4급 과장)은 반드시 포함시키되 부서·직렬·직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5급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 사업실적과 개인실적 분야를 구분하여 해당기관 현원의 5% 내외에서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붙임1 참조)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추천 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반영 심사

□ 기관별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기관별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실적심사위원회(주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제출(서식2)
 - 이의신청 인용 시 자체 선정심사결과에 반영하고 기관 공지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신설·운영
 - 기관별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사항 및 추가 이의신청 사항 접수
 - 방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에 신고(익명신고 가능)

② 재심청구 등 불공정 행위 조사 : 감사담당관

□ 조사대상

- 기관별 자체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사항
- 실적평가 중 발견된 불공정 행위 등
- 실적가점 신청서 전체공개 후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이의신청 접수 사항
 - ※ 추천대상[타 기관(부서) 공동사업 포함] 결정사항,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경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각하 처리)

□ 조사방법

- 실적 제출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자료 및 현장 확인
- 신청자의 타당성과 기여도 배분 적정성 등 조사

□ 결과조치

- 부정행위자와 재심청구 조사결과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시 해당자(부서) 소명서 징구 제출
- 가점 부정행위자 및 소속기관 페널티 부여

< 2017년 상반기 실적가점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안내 >

- ◆ 실적가점 직원 이의신청기간 확대 등 공정성 확보
 - 이의신청기간 2일 ⇒ 3일로 연장
 -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신설 운영(익명가능)으로 공정성 강화
- ◆ 불공정행위 기관 페널티 신설로 기관장 책임성 강화
 - 현행 불공정행위 개인 및 부서장 페널티에서 소속 기관까지 페널티 확대
 - ▶ 해당기관 당해연도 평가 즉시 배제, 향후 2년간 실적가점 신청 배제

③ 실적평가 : 외부전문기관

실적가점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사업실적 평가

- 평가내용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 성공적 추진사업 선정 및 순위부여
- 평가기준
 - 추천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평가에 반영
 - 제출사업에 대한 실국 우선순위는 절대적이지 않고 평가에 참고
 - 사업성격(중요도, 난이도), 사업성과(달성도, 효과성), 추진역량(노력도), 시정기여도(영향력) 평가
- 부여인원 : 5급 이하 현원의 5% 내외 추천 → 최종 3% 내외 선정
 - ※ 실·본부·국·사업소(3급이상)별 추천 인원 : 사업실적 70%, 개인실적 30% 내외
- 부여점수 : 1인당 1.5점 이내, 단위사업당 최고 5점 이내
 - ※ 실적가점과 서울창의상 가점 포함 개인별 최대 1.5점 인정

□ 개인실적 평가

- 다면평가
 - 실·국내 타부서 직원, 자치구 근무 경험자 등으로 피평가자 1인당 30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중 10명의 평가자 무작위 선정
(선정자 : 내부메일로 통보 / 평가자 : 다면평가 시스템으로 평가 실시)
 - 특이점수 제외법(최고·최저점을 점수산정에서 배제 후 평균계산) 적용
- 서면평가 :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추진역량, 추진성과, 시정기여도 등 평가

④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 : 인사과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급 이하 직원들로 실적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개인 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순위 부여

- ▶ 평가방법·결과 검증, 사업·개인실적 순위 부여 및 등급 가결정

□ 위원회 구성(4개 분과)

- 분과구성 : 사업실적(3개), 개인실적(1개)
- 분과위원장 : 4급 과장
- 위 원 : 각 기관별 직렬·직급별 5급 이하 직원
 - 구성인원 : 각 분과별 15명 내외(4개 분과 × 15명, 총 60명)
 - 선정방법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을 통해 공개 모집

< 선정 시 고려사항 >

- ◆ 감사평가부서 근무 경험자 우대
- ◆ 가점신청 비참여자 등 공정심사가 가능한 직원 중심 선정
- ◆ 주무부서 외에 현장·현업부서 직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
- ◆ 일부 직렬·직급, 부서로 편중되지 않도록 인원수 배분

- 역 할 : 평가결과 검증 및 순위·등급 가결정

□ 위원회 운영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평가결과를 검증하여 가점 부여 적격실적을 선정
- 분과별 위원 간 논의를 통해 순위 가결정
- 분과별 노조추천자 1명 참관
- 운영결과 조치
 - 각 분과에서 의결한 실적 순위 및 등급을 「실적인정위원회」에 추천

⑤ 「실적인정위원회」 개최 : 인사과

□ 위원회 기능

- 실적가점 신청 부정행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조치방안 최종 확정
- 외부기관 및 직원검증위원회 실적가점 부여 등급 적정성 심의
- 「서울창의상」과 중복사업 심사 및 최종 점수 부여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중복사업 조치방안

- ▶ 동일사업에 동일한 구성원인 경우 : 높은 점수 중 1건만 인정(서울시 인사규칙 46조의 3)
- ▶ 동일사업이나 구성원의 일부만 포함한 경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 ▶ 동일사업이나 구성원이 전부 불일치하는 경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유형 (참여자)	실적가점 참여자	서울창의상 참여자	처리방안
1.일 치	A, B, C	A, B, C	· 신청자별 높은점수 1건만 인정
2.포 함	A, B, C	B, C	· 가점 나누어먹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A, B	A, B, C	
3.불일치	A, B, C	C, D, E	
	A, B, C	D, E, F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15명 이내(실·본부·국장, 사업소 본부장 및 부구청장 등)

□ 위원회 심의방법

- 외부기관 및 직원검증위원회 평가 존중 및 한등급 이상 조정 불가
- 위원별 소속부서(기관)의 사업에 대한 등급조정 의견 제시불가

⑥ 실적가점 관리 : 인사과

- 사업·개인별 실적가점 부여점수 행정포털 공개
- e-인사마당 「나만의 쉼터」(My실적가점)에 개인별로 본인의 취득 점수 및 사용내역을 볼 수 있도록 관리
- 근무성적평정표 '실적가점' 반영

IV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각 기관별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17. 3.22(수)까지**
 - 기관별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7. 3.16(목)까지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7. 3.21(화)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17. 3.22(수)까지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17. 5월 중순 까지**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감사담당관) : '17. 4월 초
 - 실적별 평가심사결과(외부전문기관) : '17. 4월 중순
 - 「서울창의상」 제출(사회혁신담당관) : '17. 4월 말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 '17. 5월 초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 '17. 5월 중순

- '17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17. 5.19.(금)까지**

〈 행정 사항 〉

전 기관 공통사항

- 기관별 방침수립 후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전 전직원 공람 실시
- 각 기관장·실·본부·국장은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제도 운영, 성과 검증작업 등 자체 심사작업을 철저히 하여 부적격 취득자, 소외자 발생 등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철저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후 결과물 제출 : '17. 3.22(수)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및 요약서(서식 1) : 별도제출 및 담당자에게 메일발송 병행
 - 신청자 현황 : 신청 실적분야별로 관리프로그램 출력자료에 신청자 전원 서명날인 후 제출 (원본은 자체보관, 사본제출)
 - 심사결과 공개내용, 이의신청제도 처리현황(사업목록), 페널티 제도 등 교육현황 제출(서식 3)
 - 실적 증빙자료(사업·개인실적 구분해서 출력문서 파일철 1부, 전자파일 제출)

감사담당관

- 실적가점 신청 부정행위 정밀 조사결과 제출 : '17. 4월 초
 - ※ 인사과에서 관련자료 별도통보

사회혁신담당관

- 「서울창의상」 자료 실·본부·국별 전산입력 및 자료 제출 : '17. 4월 중순까지
 - ※ 확정포인트는 추후 인사과 입력

□ 실적가점 제도개선 필요성

- '12년 전면적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적가점에 대한 직원만족도 저조
 - 본래취지와 다르게 승진후보자군을 위한 제도로 인식, 노조 등 제도개선 지속적 요구
 - 무임승차, 나눠먹기 등 불공정행위로 실적가점제도 직원 불신 증가
- 직원들의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실적가점을 폐지할 경우 성과주의 인사운영 배치
 - 승진이 적체된 직렬의 경우 업무실적보다는 연공서열, 자격증가점에 따라 승진 결정
 - 격무·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 우려

〈 승진후보자 명부반영 평정 현황 〉 (단위 : 점)

총점	근무성적평	경력평정	가점평정				
			실적가점	직무자격증	외국어	특수지 근무	교류가점
103.24	70	30	1.5	0.5	0.25	0.63	0.36

⇒ **현행 평정체계 상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로 업무동기부여 및 성과보상을 위한 실적가점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폐지보다는 개선·운영 추진 필요**

□추진경과

- '16.12 ~ '17. 2 실적가점 운영실태 분석 및 노조 등 의견수렴
 - 실적가점의 운영실태 분석 및 실적가점 개선(안) 노조 등 사전 협의
- '17.2.17~2.21 실적가점 제도개선 직원 설문조사 실시
 - 서울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 대상(전산7급, 기술직군 5급이하) 2,960여명 참여

〈 실적가점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

- ▣ **실적가점 제도와 관련, 가점규모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대다수(응답자의 57%)가 점수상한을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1점 이하로 축소 희망**
 - (부여대상) 현행유지와 개선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음.
 - ▲ 현행유지(5급이하) : 22.8% ▲ 6급이하로 변경 : 29.6% ▲ 7급이하로 변경 : 30.2%
 - (운영분야) 현행유지 응답률이 높아 현재 운영에 대체로 만족
 - ▲ **현행적정 : 36.9%** ▲ 사업실적만 운영 : 23.5% ▲ 개인실적만 운영 : 24.8% ▲ 기타 : 14.8%
 - (가점상한) 과반수 이상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는 수준인 1점이하로 축소 희망
 - ▲ 현행유지(1.5점) : 22.9% ▲ **1점이하 축소 : 56.6%** ▲ 점수상향 : 6.7%
 - (부여인원) 축소를 희망하는 비율이 42%로 다소 높았으나 반면 현행유지를 원하는 직원도 37%에 달하고 있어 실적가점이 업무성과에 대한 최소한의 동기부여로 작용
 - ▲ **현행적정(현원의 5%추천, 3%부여) : 37.4%** ▲ **규모축소 : 41.6%** ▲ 기타 : 21%
- ▣ **실적가점 운영과 관련, 무임승차,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 평가체계의 개선보다 불공정행위 기관 및 개인에게 페널티를 주자는 의견이 압도적**
 - 응답자 52.4% 절차개선 공감, 그 중 70.5%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페널티부여를 희망

○ '17.2.24 **실적가점 제도개선 직렬별 의견수렴 간담회**

- 실적가점 상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이 공통적
- 단, 부여인원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최소한의 동기부여를 위해 현행유지 또는 확대하자는 의견임.

〈 실적가점 제도개선 직원의견 수렴 간담회 결과〉

- ▶ 실적가점 운영에 대해서는 근무기관, 직렬에 따라 이견이 있었으나, 실적가점 제도개선은 가점 상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이 공통적임.
- ▶ 다만, 부여인원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최소한의 동기부여를 위해 현행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 및 협업을 통한 업무추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적가점 인원을 줄일 경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근무의욕 상실 우려
 - 소수직렬의 경우 실적가점 부여인원 축소는 실적가점 진입장벽으로 작용 가능.

○ '17.3. 3 **실적가점 제도개선 인사담당 의견수렴 회의**

- 실적가점 상한의 축소는 필요하나, 부여인원의 경우 기피부서 및 격무부서 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및 동기부여 차원에서 현행유지 동감

□ **개선방향**

- **(가점상한)** 근무성적 평가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최소화 운영
 - (현행) 1인당 최고점수 1.5점 ⇒ (개선) 0.9점(수1~수4번 차이)
- **(부여인원)** 성과보상 및 동기부여를 위해 현행수준 유지(현원 3% 내외)
 - 격무업무, 행정수요 급증업무 등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이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현행수준 유지
 - 소수직렬의 경우 실적가점 인원 대폭 축소는 실적가점 진입장벽으로 작용

□ **세부 개선(안)**

○ **주요 변경내용**

구분	현 재	개 선
대상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현행과 같음
시기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현행과 같음
인원	현원의 5%이내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현행과 같음
점수 상한	사업실적 사업당 5점 및 1인당 1.5점 이내	사업실적 사업당 3점 및 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 1인당 1.2점 ~ 0.1점 이내	개인실적 1인당 0.6점 ~ 0.05점 이내

○ 평가부문별 변경사항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및 비율				등급별 점수 및 비율				비고 (점수)
		S (10%)	A (20%)	B (20%)	C (20%)	S (10%)	A (20%)	B (20%)	C (20%)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5 (1.5점)	4 (1.2점)	3 (0.9점)	2 (0.6점)	→ 3 (0.9점)	2 (0.6점)	1 (0.3점)	0.5 (0.15점)	사업당 (1인당)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0.6	0.4	0.2	0.1	1인당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0.6	0.4	0.2	0.1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1.0	0.7	0.5	0.3	→ 0.6	0.4	0.2	0.1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5	0.3	0.2	0.1	→ 0.3	0.2	0.1	0.05	

실적가점 제도개선(안) 적용·시행 : '18. 상반기 평가시

- 실적가점은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1년 예고 후 시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2>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 기 부여한 실적가점은 '17. 하반기까지는 “감” 적용 없이 전체를 반영하고
'18년 상반기부터는 가점 축소 비율을 고려, 기존 가점의 60%를 반영